

요한 카스파 블룬칠리, *Allgemeines Staatsrecht*; 가토 히로유키, 『國法汎論』

1. 자료 설명

1908년 7월 30일 『대한매일신보』에 ‘민족과 국민의 구별’이라는 제호로 실린 논설은 몇 가지 점에서 뜻 깊은 글이다. 이 논설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민족과 ‘국민’의 의미를 뚜렷이 가르면서 주권의 주체를 개념으로 구성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로 유명하다. 이후로 ‘국민’은 정치적 의미론에서 ‘민족’의 상위에 서면서 근대세계를 이끄는 신호가 되었다. 이 글은 또한 외래 사유가 낫선 토양에 뿌리내리는 하나의 단면을 드러낸다. 여기에 담긴 주요 논지는 동시대 중국의 계몽학자 량치차오(梁啓超)가 1903년 「政治學大家伯倫知理之學說」에¹⁾ 이미 소개했던 내용이다. 글 제목에 나온 ‘정치학 대가’는 스위스 태생으로 독일에서 공법학 교수로 활동했던 요한 카스파 블룬칠리(Johann Caspar Bluntschli, 1808~1881)이다. 량치차오는 일본 망명 시절 블룬칠리의 국가학에 접했는데, 그 텍스트는 일본어 번역본이나 한문 중역본으

1) 이 글은 처음에 『新民叢報』 제38·39호 합본(1903년 8월 14일), 19~53쪽에 실렸으며, 나중에 『음빙실문집』 권13, 67~89쪽에 올랐다.

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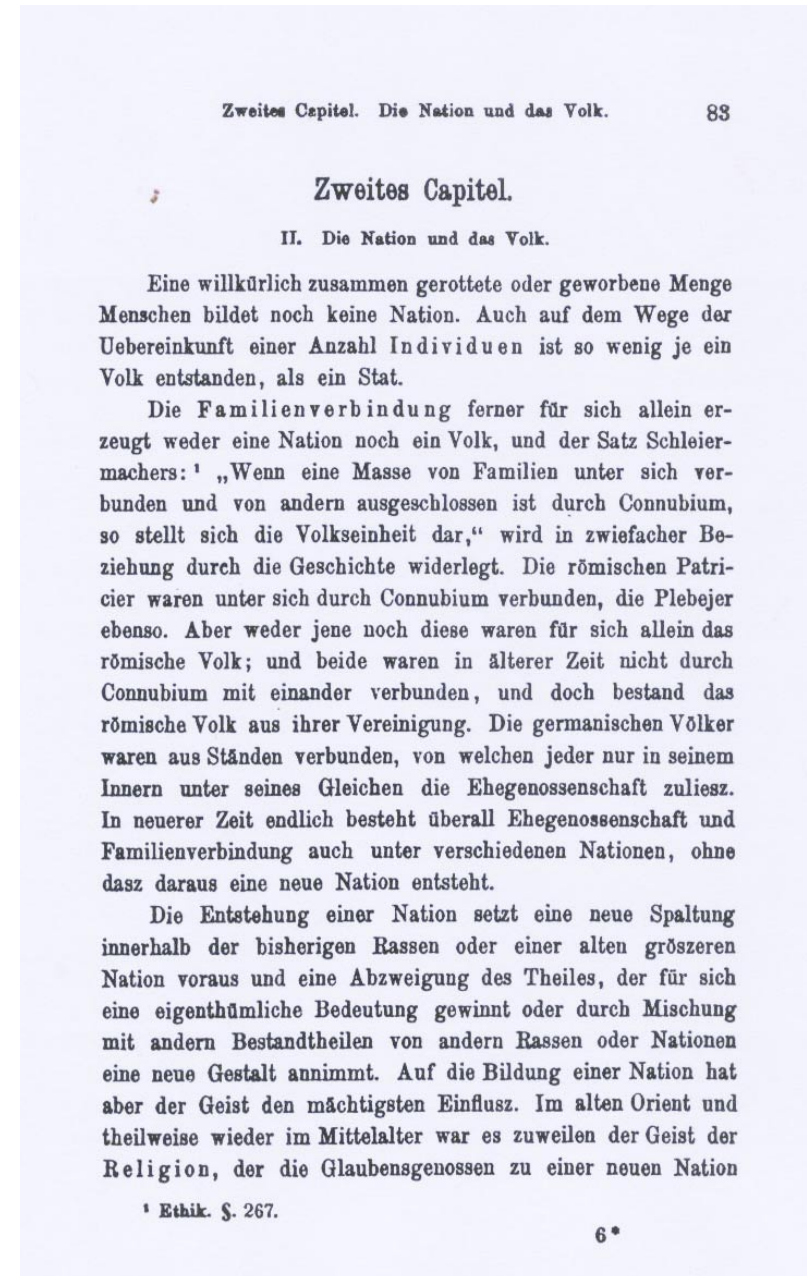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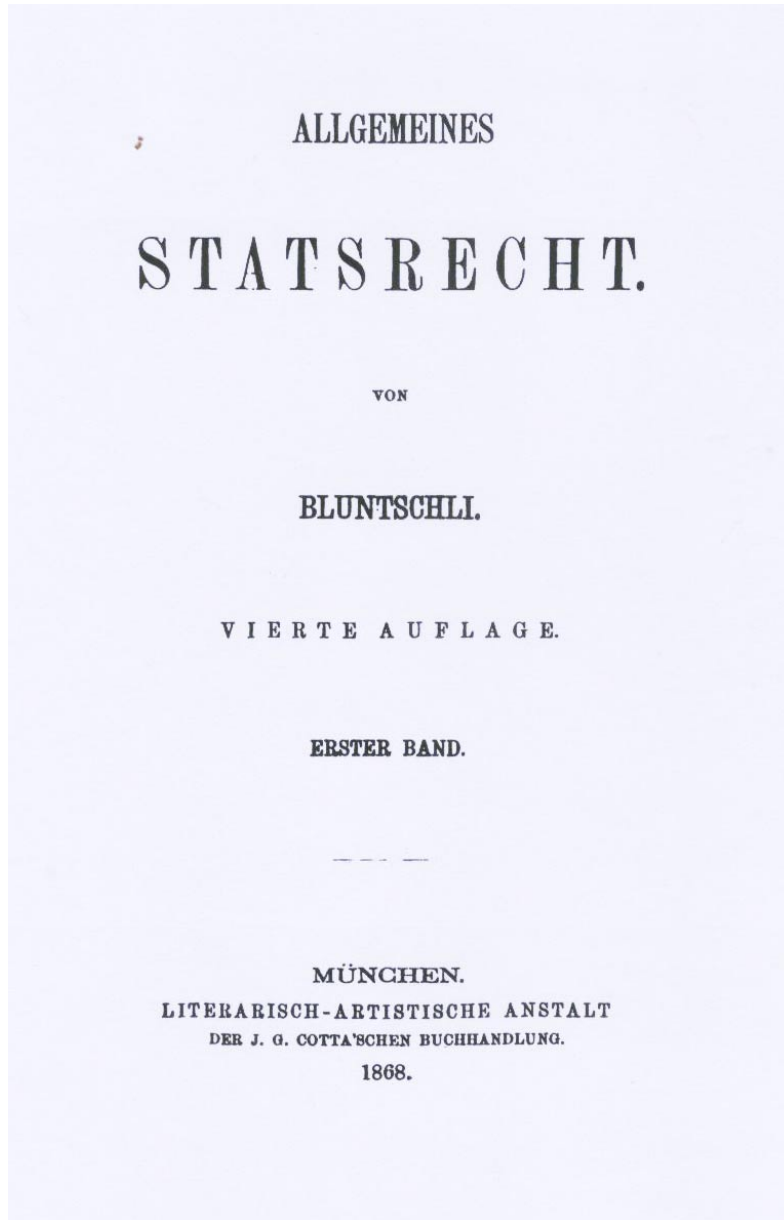
블룬칠리는 입헌군주제의 당위를 인정하면서 보수주의에 기렸지만, 그것이 밑으로부터 형성되는 국민국가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유주의도 옹호했던 인물이다. 이런 점에서 그의 이름과 함께하는 유기체국가 이론이 메이지 시대 지식계의 공명을 이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주요 저술 대부분이 일본어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 가운데 그의 주저 『일반국법 Allgemeines Staatsrecht』이 가장 먼저 『國法汎論』으로 번역되었는데, 역자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 1836~1916) 또한 메이지 지식인 뿐만 아니라 량치차오의 사유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유명하다. 그 무렵 시강(侍講)을 맡고 있던 가토는 천황에게 읽힐 목적으로 그 책을 번역했다고 한다. 일본어로 번역된 최초의 독일 사상서였던 이 책은 먼저 1876년에 서문(首卷)과 권6~권9까지 上帙 1로 번역되고, 1876년과 1879년 사이에 권1~권4를 담은 上帙 2~10이 나왔는데, '민족'과 '국민'의 의미를 나누어 서술한 내용은 '국민(Volk)과 국토(Land)'를 서술한 권2에 들어 있다.

블룬칠리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동아시아 개념 소통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그의 글 일부를 <자료정선>의 형식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그의 저술 범위는 방대하다. 그 가운데 동아시아 개념세계에서 울림이 컸던 '민족'과 '국민'의 의미론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에 소개하는 글은 가토가 저본으로 삼았던 *Allgemeines Staatsrecht*(4. Auflage, 1. Band, München, 1868), 제2권 가운데 문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2~4장이다. 일본어 번역본, *イ・カ・ブルンチュリ*, 加藤弘之譯, 『國法汎論』上帙 第 2~10冊(1876~79, 文部省藏版)의 해당 내용도 함께 우리말로 옮겨 소개한다. 여기에서 가토가 처음에 독일어 Volk를 國民으로, 그리고 Nation을 民種으로 번역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민중'이 '민족'으로 바뀌어 량치차오에게, 그리고 다시 『대한매일신보』에 전이되는 과정은 또 다른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량치차오가 쓴 「政治學大家伯倫知理之學說」은 블룬칠리의 다른 번역 텍스트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블룬칠리는 1874년에 『일반국법』을

축약하여 『교양인을 위한 독일 국가학』(*Deutsche Staatslehre für Gebildete, Nördlingen*, 1874)을 출간했는데, 이 책은 히라타 도스케(平田東助), 히라쓰카 데이지로(平塚定二郎)가 『國家論』(東京: 春陽堂, 1889)의 제목으로 일역했으며, 아즈마 헤이지(吾妻兵治)가 그것을 다시 한문으로 증역하여 『國家學』(東京: 善隣譯書館, 1899)으로 펴냈다. 량치차오는 주로 이 번역본들을 원용하여 유기체국가 이론을 중국 토양에 접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이 과정은 다음 <자료정선>의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가토의 번역 텍스트는 동아시아 '민족'과 '국민' 개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해제: 박근갑(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2. 독일어 텍스트 원전



verband und von den Andersgläubigen trennte. Stärker aber noch und durchgreifender trennt und verbindet die Nationen der Geist der Sprache. Die Sprachgemeinschaft ist das sicherste Zeichen der nationalen Gemeinschaft. Sie bedeutet Einheit der Geistescultur. Erst in zweiter Linie schlieszt sich die Gemeinschaft der Sitte und des Rechts an. Aber nur allmählich wächst die Nation zu einer solchen Einheit zusammen, welche sich über die Individuen und über die Familien erhebt und Alle verbindet. Dann tritt auch die besondere Art sichtbar hervor in der Phisionomie der Nation, in der Haltung, Kleidung, Wohnung derselben, in hundert kleinen Zügen, die leicht zu erkennen, schwer zu beschreiben sind. Erst wenn die Nation ihre Eigenart schon durch mehrere Generationen hindurch fortgepflanzt hat, zeigt sich so die nationale Rasse mit ihren Vorzügen und ihren Schwächen, im Geist und Charakter wie in den Körpereigenschaften.

Die Nation ist ein Kulturbegriff. Das Volk aber ist ein statsrechtlicher Begriff. Erst im State und durch den Stat wird die Nation zum Volk. Die Statsgemeinschaft bildet die Volkseinheit.

Auch das Volk im eigentlichen Sinne — die Ausdrücke Nation und Volk werden nicht immer auseinander gehalten — bedarf, damit es zu einer wahren Einheit wird, eines dauernden Zusammenseins und Zusammenlebens. Dann bildet sich ein bestimmter Volksgeist aus und ein bestimmter Volkscharakter, die verschieden sind von dem individuellen Geist und Charakter und fortgepflanzt werden in der Masse der Volksgenossen. Es gibt daher auch eine Volksrasse, wie es eine nationale Rasse gibt und beide treffen nicht immer zusammen.

Die Nation kann nur im natürlichen, nicht im juristischen Sinne eine Person genannt werden, weil sie in der Sprache die Einheit ihres Geistes äuszert. Aber ihre Gemeinschaft ist nicht zu einem Rechtswesen abgeschlossen. Sie ist keine stats-

rechtliche Person. Das Volk dagegen, welches im State einen Gesamtkörper gefunden hat, ist zugleich eine Rechtsperson geworden.

Auch die Völker sind organische Wesen; und deshalb stehen sie unter den Naturgesetzen alles organischen Lebens. In der Entwicklungsgeschichte der Völker lassen sich dieselben Altersperioden unterscheiden, wie in dem Leben der Individuen. Die natürlichen Kräfte und Anlagen eines Volkes, seine Vorstellungen, seine Bedürfnisse sind anders in der Zeit seiner Kindheit, und anders in der Zeit seines Alters. Wie für den einzelnen Menschen, so ist auch für das Volk die mittlere Periode seines Lebens regelmäszig die Zeit der höchsten Entwicklung seines Geistes und seiner Macht. Nur sind diese Perioden bei den Völkern nach Jahrhunderten zu bemessen, während sie bei den Individuen nach Jahrzehnten sich unterscheiden. Unsterblichkeit aber scheint auch den Völkern nicht verliehen zu sein.

Anmerkungen. 1. Es ist ein Verdienst Savigny's, die Bedeutung des Volkes als eines organischen Wesens und den Einfluss seiner Lebensalter auf die Rechtsbildung in Deutschland wieder nachdrücklich hervorgehoben zu haben.

2. Ich habe früher, dem französischen Sprachgebrauche folgend, das Naturvolk „Volk“ (peuple) und das Statsvolk „Nation“ genannt. Die Etymologie begründet aber den umgekehrten Sprachgebrauch, indem natio von nasci auf die Geburt und die Rasse, Volk (populus, πῶλις) auf die Stadt und den Stat hindeutet, und das deutsche Sprachgefühl folgt dieser Deutung. Demgemäsz waren die Deutschen im Mittelalter zugleich eine Nation und ein Volk, in den letzten Jahrhunderten nur eine Nation, kein Volk mehr, und sind heute wieder auf gutem Wege auch ein Volk zu werden. Die Schweizer, obwohl aus verschiedenen Nationalitäten zusammengesetzt, sind ein Volk.

Drittes Capitel.

Nationale Rechte.

Es ist ein Fortschritt der Civilisation, dasz wir anfangen, von nationalen Rechten zu sprechen und Achtung für dieselben zu fordern. Da die Nationen Theile der Menschheit und das Product eines groszen welthistorischen Entwicklungsprocesses sind, so sollen sie auch in ihrem Bestande beachtet und geschützt werden. Das erste und natürlichste Grundrecht ist allezeit die menschliche Existenz. Welche menschliche Existenz aber hätte ein besseres Recht von Natur als die des nationalen Gemeingeistes? Sie ist ja zugleich die Unterlage auch der individuellen Existenz und eine Grundbedingung der Entwicklung der Menschheit.

Aber nur allmählich wird es gelingen, dieses zunächst bloss sittliche Gebot in die entsprechende Rechtsformel zu fassen. Die Hauptbedeutung des Nationalitätsprincips liegt vorerst noch in der Politik, nicht im Statsrecht.

Als nationale Rechtsgrundsätze aber lassen sich folgende anführen, die daher von den Genossen derselben Nation geltend gemacht werden dürfen:

1. Das Recht auf die nationale Sprache.

Die Sprache ist das eigenste Gut jeder Nation, in der Sprache vorzüglich gibt sich die Eigenart derselben kund, sie ist das stärkste Band, welches die Genossen der Nation zu einer Culturgemeinschaft verbindet.

Daher darf der Stat nicht der Nation ihre Sprache verbieten, noch die Ausbildung derselben und ihre Litteratur untersagen. Es ist im Gegentheil Statspflicht, die Cultur der Sprache frei gewähren zu lassen und so weit die allgemeinen Bildungsinteressen nicht dadurch verletzt werden, wohlwollend zu fördern.¹ Die Unterdrückung der einheimischen Sprachen

¹ Oesterreich. Statsverfassung v. 1849, §. 5: „Alle Volksstämme

der Provinzialen durch die Römer war ein furchtbarer Missbrauch der Statsgewalt, und das Verbot der wendischen Volkssprache in dem Gebiete des deutschen Ordens unter Androhung der Todesstrafe war eine widerrechtliche Barbarei.

Aus diesem Princip folgt aber nicht, dasz es in den Statsangelegenheiten nicht eine bevorzugte Statsprache geben dürfe mit Ausschluss aller übrigen Volkssprachen. So weit es sich nicht um das bloss Nationalleben, sondern um das Statsleben handelt, da kann das Interesse des gesammten Statsvolkes die Einheit der Sprache erfordern. So wird im englischen Parlamente mit Recht nur englisch, nicht auch irisch noch gälisch gesprochen, in den französischen Centralbehörden nur französisch, nicht auch deutsch noch keltisch. Sorgfältiger aber achtet die Schweiz die verschiedenen Nationalitäten, aus denen sie zusammengesetzt ist, indem sie die deutsche mit der französischen Statsprache verbindet, und nach Bedürfnis auch die italienische respectirt.

Ebenso wenig ist der Stat gehindert, dafür zu sorgen, dasz in den Schulen die höhere Cultursprache gepflegt und die Kinder einer noch ungebildeten Nation an der Errungenschaft und Erbschaft einer veredelten Litteratur einen Antheil erhalten. Dagegen wird es von einer civilisirten Nation als ein bitteres Unrecht empfunden, wenn ihre Sprache aus der Schule und der Kirche zu Gunsten einer fremden Sprache verdrängt wird.

2. Die Nation hat ferner ein Recht, ihre nationale Sitte zu üben, so weit dieselbe nicht dem höhern menschlichen Sittengesetze widerstreitet, oder die Rechte des States verletzt. Die herrschenden Engländer sind berechtigt, nicht länger zu dulden, dasz die indischen Frauen zur Todtenfeier ihrer Männer sich ebenfalls dem Tode opfern: die Untersagung aber unschädlicher Volksspiele ist eine nicht zu rechtfertigende Anmassung des States.

sind gleichberechtigt (?) und jeder Volksstamm hat ein unverletzliches Recht auf Wahrung und Pflege seiner Nationalität und Sprache.“

3. Auf dem Gebiete der eigentlichen Rechtsinstitutionen ist die Berechtigung der bloßen Nation auf statliche Anerkennung und Schutz geringer, weil hier theils die Einheit und Harmonie des States, theils die Interessen des statlichen Culturvolkes einen naturgemäßen höhern Einfluß äuszern. Eine die Gesamtbevölkerung umfassende, und die einzelnen Volksrechte umbildende oder aufhebende Gesetzgebung ist ein Bedürfnis des entwickelten States. Man darf es den Römern nicht verargen, daß sie das römische Recht überall in ihrem Reiche einzuführen suchten. Rücksichtsloses Unmasz aber verdient Tadel. Einen der ärgsten Miszgriffe der Art hat das englische Parlament begangen, als es 1773 in Bengalen die Formen des englischen Gerichtsverfahrens und des englischen Rechts den dafür unreifen Indiern aufnöthigen wollte. In den deutschen States aber verfuhr man gleichzeitig in der Aufrechthaltung eines wahren Wustes von hergebrachten Statutarrechten für kleine Volksparcellen überängstlich, und in der Einführung eines fremden gemeinen Rechtes für die Nation über die Maszen kühn und eingreifend.

Mit Bezug auf die Fortbildung des Rechts gewinnt daher das Volk die Oberhand über die Nation und vor der Einheit des Gesetzes und der Rechtspflege müssen sich die nationalen Verschiedenheiten beugen, die Rechtsgleichheit der Statsbürger erhält den Vorzug vor der Mannigfaltigkeit der nationalen Uebungen. Es ist den Römern doch sehr viel leichter geworden, die unterthänigen Nationen im Recht zu romanisiren als in der Sprache zu latinisiren, und wir nehmen keinen Anstosz daran, daß die Franzosen ihren Code Napoleon auch auf das deutsche Elsass und auf die alt-gallische Bretagne anwenden. Wir tadeln es nicht, wenn die englische Gesetzgebung auch das Recht der Iren und der Walliser gleichmäszig ordnet. Aber wir erinnern uns doch auch, daß der Versuch der Römer, die noch rohen Germanen der römischen Rechtspflege zu unterwerfen, den groszen germanischen Freiheitskampf entzündet

hat und es während Jahrhunderten ein Princip der germanischen Rechtsüberzeugung war, man müsse jede Nation bei ihrem Rechte lassen und jeden nach seinem angebornen (d. h. nationalen) Rechte schützen. Die altrömische Maxime einseitig durchgeführt, hätte alle nationale Freiheit mit dem nationalen Recht zerstört, die alt-germanische Weise zähe bewahrt, hätte alle höhere Stats- und Rechtskultur unmöglich gemacht. Es war ein Glück für die Freiheit der Nationen und für die fortschreitende Civilisation, daß Römer und Germanen feindlich aufeinander trafen und keines der beiden Principien zu alleiniger Herrschaft gelangte.

4. Wird eine Nation in ihrer sittlichen und geistigen Existenz von der Statsgewalt angegriffen, so sind ihre Genossen zum zähesten Widerstand dagegen veranlaszt. Es gibt keine gerechtere Ursache zur Auflehnung wider die Tyrannei, als die Vertheidigung der Nationalität.* Die Legalität kann dabei Schaden leiden, das Recht wird nicht verletzt.

5. Zwischen der Nation und dem Volk besteht eine natürliche Wechselwirkung. Politisch begabte Nationen können zu voller Entfaltung ihrer Natur gelangen, wenn sie Völker werden, und Völker, die aus mancherlei nationalen Elementen gemischt sind, haben hinwieder das Streben, zu besondern Nationen zu werden. Die Politik beachtet diese Wandlungen und sucht sie zu fördern oder zu hindern. Aber auch die tiefsten Rechtsfragen werden hier angeregt.

Versuchen wir's, einige Rechtssätze auszusprechen:

a) Nicht jede Nation ist berechtigt, sich als Volk zu constituiren. Sie ist es nicht, wenn sie nicht die geistige und

* Niebuhr (Preussens Recht gegen den Sächsischen Hof): „Die Gemeinschaft der Nationalität ist höher als die Statsverhältnisse, welche die verschiedenen Völker eines Stammes vereinigen oder trennen. Durch Grammatik, Sprache, Sitten, Tradition und Literatur entsteht eine Verbrüderung zwischen ihnen, die sie von fremden Stämmen scheidet, und die Absonderung, die sich mit dem Auslande gegen den eignen Stamm verbindet, zur Ruchlosigkeit macht.“

sittliche Fähigkeit hat, sich selbst zu regieren. Nicht alle Nationen sind von Natur Statsvölker. Den einen fehlt es an einer ihnen eigenthümlichen Statsidee, den andern an der Kraft, dieselbe selbständig zu verwirklichen. Ohne Fähigkeit aber kein Recht. Solche Nationen sind daher von Gott und der Geschichte darauf angewiesen, sich der Leitung oder Erziehung begabterer und kräftigerer Völker unterzuordnen.

b) Jede Nation, welche eine eigenthümliche Statsidee und zugleich die Kraft und das Bedürfnisz hat, dieselbe zu verwirklichen, ist berechtigt, einen nationalen Stat zu bilden; aber sie ist bei diesem Streben verpflichtet, die historische Rechtsordnung insoweit zu respectiren, als dieselbe nicht ihre naturgemäße Entwicklung widerrechtlich hindert.

c) Die Herstellung eines nationalen States erfordert keineswegs die Vereinigung aller nationalen Bestandtheile zu Einem Statsganzen, sondern nur ein so starkes Zusammenwirken nationaler Elemente, dasz das der Nation eigene Statensbild zu sicherer und ausreichender Erscheinung gelangt.

d) Eine Nation, die Volk geworden oder im Begriff ist, Volk zu werden, ist wohl berechtigt, die zerstreuten Glieder, deren sie zu ihrem Körper bedarf, an sich zu ziehen, aber nicht berechtigt, solche nationale Bestandtheile, die in einem andern Statsverbande ihre Befriedigung finden, gegen ihren Willen aus demselben loszureiszen, wenn sie ihrer entbehren kann.

e) Die höchste Statensbildung beschränkt sich nicht auf eine einzelne Nationalität, sondern verbindet verschiedene nationale Elemente zu einer gemeinsamen menschlichen Ordnung.

f) Wenn ein Stat aus verschiedenen Nationalitäten besteht, die zusammen Ein Volk bilden, so dürfen die politischen Rechte nicht nach Nationalitäten vertheilt werden, sondern es ist die politische Gemeinschaft und Gleichberechtigung ohne Unterschied der Nationalitäten zu bewahren.³

³ Eötvös, Die Nationalitätsfrage. Wien 1865.

Ueber jene Fähigkeit und Würdigkeit entscheidet freilich bei dem unvollkommenen Zustande des Völkerrechts kein menschliches, sondern nur das Gottesgericht, welches in der Weltgeschichte sich offenbart. Nur in groszen Kämpfen durch seine Leiden und seine Thaten bewährt das Volk gewöhnlich seine Berechtigung.

Viertes Capitel.

Volksthümlichkeit der Verfassung.

Höher berechtigt im State als das bloße Naturvolk (die Nation) ist das Statsvolk. Es ist die lebendige Gesamtindividualität, welche in dem Statskörper wohnt.

Es ist keineswegs nothwendig, dasz das Statsvolk nur aus Einem Naturvolke bestehe: und sogar zuträglich, dasz es verschiedene nationale Bestandtheile in sich habe. Diese Vereinigung zweier oder mehrerer Nationalitäten in Einem Volke kann dazu dienen, dasz die Mängel derselben ergänzt und die Vorzüge derselben gesteigert werden. Zugleich dient diese Mischung dazu, das Bewusstsein wach zu erhalten, dasz die Bestimmung des States nicht eine bloz volksmäßige, sondern eine menschliche sei.

Dagegen ist es der Einheit des States allerdings sehr förderlich, wenn das Statsvolk wesentlich auf eine bestimmte Hauptnation sich stützen kann und die übrigen Volkselemente nur in einem numerisch untergeordneten Verhältnisse zu demselben stehen, wie die Deutschen in Frankreich und Ruszland, die slavischen Stämme in Preuszen, die Juden in Deutschland, die Franzosen in Nordamerika. Viel schwieriger ist die Einheit des Statsvolkes zu begründen und zu bewahren, wenn dieselbe aus mehreren Nationen besteht, welche an Macht und Bedeutung mit einander wetteifern. Diese Schwierig-

keit hatte England zu überwinden, indem es erst die Sachsen und die Normannen, dann die Engländer und Schotten, zuletzt diese zusammen und die Iren einigte, und ihr zu erliegen ist für Oesterreich eine noch nicht überwundene Gefahr.

Soll der Stat als Leib des Volks seine Bestimmung erfüllen, so ist es klar, dass seine Einrichtungen und Gesetze auf die Eigenschaften und die Bedürfnisse desselben Rücksicht nehmen, mit einem Worte, dass der Stat volksthümlich sein muss. Eine Statsverfassung, welche zu dem Charakter des Volks nicht passt, seine Eigenthümlichkeit nicht beachtet, seinem Geiste und seiner Sinnesweise nicht gemäss ist, ist ein unnatürlicher und ein untauglicher Körper. Wird dieselbe durch fremde Gewalt einer Nation aufgedrungen, oder wie wir das auch schon in Zeiten grosser politischen Fieber gesehen haben, von dem miszleiteten und kranken Volke selbst gewählt, so stürzt sie immer wieder zusammen, sobald jene Gewalt nachlässt, oder das Volk seine Besonnenheit wieder findet. In beiden Fällen ist aber das Gebrechen in dem statlichen Organismus so gross, dass dasselbe auch den Untergang des Volkes zur Folge haben kann und jedenfalls seine volle Gesundheit auf lange Zeit hin verhindert.

Jede grosse Nation, die geeignet ist zum Statsvolk zu werden, hat auch eine eigenthümliche politische Lebensansicht, und eine besondere statliche Mission. Das Volk erfüllt diese Bestimmung, indem es dem State das Gepräge seines Wesens verleiht. Das ist das natürliche Recht des Volkes auf eine volksthümliche Verfassung. Die Verschiedenheit der Völker entspricht so der Verschiedenheit der Nationen, und die Mannichfaltigkeit der statlichen Formen beurkundet die Mannichfaltigkeit, welche Gott in die Natur der Nationen gelegt hat.

Die Eigenthümlichkeit des Volkes spiegelt sich aber nicht etwa ein für allemal in dem State ab. Das Volk durchlebt verschiedene Phasen seiner Entwicklung, und es ändern sich,

obwohl es wesentlich dasselbe bleibt, doch seine Bedürfnisse und seine Ansichten, je nach der Lebensperiode, in welcher es gerade steht. Der nationale und volksthümliche Stat begleitet das Volk auch in dieser Entwicklung, und macht auch in seinem Organismus ähnliche Wandlungen und Umgestaltungen durch, ohne deshalb völlig ein anderer zu werden. Wie sehr verschieden war die äussere Erscheinung des römischen States in den verschiedenen Perioden seiner Geschichte, und dennoch wie klar stellt sich fortwährend der national-römische Charakter derselben dar. Die königliche, die republikanische, die kaiserliche Statsform entsprechen den verschiedenen Lebensaltern des römischen Volks, in allen aber wird das spezifisch-römische Gepräge sichtbar. Die englische Monarchie unter den Tudors unterscheidet sich von der englischen Monarchie unter dem Hause Hannover, wie sich die Entwicklungsstufen des englischen Volkes im XVI. und XVIII. Jahrhundert unterscheiden. Das ist das natürliche Recht des Volkes auf zeitgemässe Umbildung seiner Verfassung.

Fassen wir das Gesagte in Einem Satze zusammen: Die naturgemässe Statsform entspricht jeder Zeit der Eigenthümlichkeit und der Entwicklungsperiode des Volkes, welches in dem State lebt.

Anmerkungen. 1. Cato bei Cicero de Republ. II. 21. „Nec temporis unius nec hominis est constitutio reipublicae.“

2. Friedrich der Grosse von Preussen (im Antimacchiav. 12.): „Die Charaktere der Individuen sind verschieden, und die Natur hat dieselbe Verschiedenheit in den Charakteren (dans les tempéraments) der Staten hervorgebracht. Ich verstehe unter Charakter eines States seine Lage, seine Ausdehnung, die Zahl und den eigenthümlichen Geist seiner Völker, seinen Handel, seine Gewohnheiten, seine Gesetze, seine Stärke, seine Mängel, seine Reichthümer, seine Hilfsquellen.“

3. *De Maistre* (1796): „Eine Verfassung, welche für alle Nationen gemacht ist, taugt für gar keine; sie ist eine leere Abstraction, ein Werk der Schale, nur geeignet, den Geist an idealen Voraussetzungen zu üben, und für den reinen Menschen in den eingebildeten Räumen bestimmt, wo er allein zu finden ist“ (qu'il faut adresser à l'homme dans les espaces imaginaires où il habite).

4. Napoleon an die Schweizer (1803): „Eine Regierungsform, die nicht das Resultat einer langen Reihe von Begebenheiten, Unglücksfällen, Anstrengungen und Unternehmungen eines Volkes ist, kann niemals Wurzel fassen.“

5. Bismondi, Studien über die Verfassung freier Völker: „Die Verfassung nicht minder als die Gesetze beruhen auf den Gewohnheiten einer Nation, ihren Neigungen, Erinnerungen, auf den Bedürfnissen ihrer Vorstellungsweise. Es ist ein unverkennbares Zeichen eines äusserst oberflächlichen und zugleich falschen Geistes, wenn er versucht wird, eine neue Verfassung einem Volke nicht nach seinem eigenthümlichen Geiste und seiner eigenen Geschichte, sondern nach einigen allgemeinen Sätzen zu geben, welche man mit dem Namen von Principien fälschlich ehrt. Die letzten fünfzig Jahre, welche so viele anspruchsvolle Verfassungen haben entstehen sehen, und in welchen so viele Verfassungen bloss entlehnt worden, können auch dafür Zeugnis geben, dass von all diesen auch nicht eine den Erwartungen ihres Urhebers oder den Hoffnungen derer, welche sie angenommen, entsprochen habe.“

6. L. Ranke (Zeitschr. I. 91.): „Unsre Lehre ist, dass ein jedes Volk seine eigene Politik habe. Was will sie doch sagen, die Nationalunabhängigkeit, von der alle Gemüther durchdrungen sind? Kann sie allein bedeuten, dass kein fremder Intendant in unsern Städten sitze, und keine fremde Truppe unser Land durchziehe? Heiszt es nicht vielmehr, dass wir unsere geistigen Eigenschaften, ohne von Anderen abzuhängen, zu dem Grade von Vollkommenheit bringen, deren sie in sich selber fähig sind?“

3. 요한 카스파 블룬칠리, 『일반국법』

제2권 국민(Volk)과 국토(Land)

제2장 2: 민족(Nation)과 국민(Volk)

제 대로 함께 모였거나 모집된 다수의 인간이 민족을 형성하지는 않는다. 또한 몇몇 개인이 합의한다고 하나의 국민, 하나의 국가가 일어나지도 않는다.

더구나 가족들의 결합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민족도, 하나의 국민도 이룰 수 없다. “여러 무리의 가족이 연대하거나 혼인 관계를 통해 굳게 결속할 때 국민 통합이 이루어진다.”라고 썼던 슈라이어마허(Schleiermacher)의 글은²⁾ 두 가지 관련성에서 역사적 사실과 어긋난다. 로마의 세습귀족들은 혼인 관계를 통해 서로 결합했으며, 평민들 또한 그러했다. 그러나 귀족이든 평민이든 그 자체만으로 로마 국민이 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 그보다 더 옛날에는 혼인 관계를 통해 서로 연대하지도 않았으며, 로마 국민이 그들의 연맹에서 생겨나지도 않았다. 게르만 국민들은 신분에 따라 결속했는데, 개개 신분은 본성적으로 같은 신분끼리 혼인 공동체를 허용했다. 근래에 이르러 마침내 여러 다양한 민족들 사이에서 흔하게 혼인 공동체와 가족들의 유대 관계가 생겨나지만, 그로부터 하나의 새로운 민족이 태어나지 않는다.

하나의 민족은 재래의 인종들 또는 옛날의 대 민족 내부에서 새로운 분열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데, 그 자체로 하나의 고유한 의미를 획득하거나 다른 인종 또는 민족에서 유래한 이질적 구성요소와 섞이면서 하나의 새로운 형상을 띠게 되는 한 무리가 나뉘어 갈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민족 형성 과정에서 정신이 무엇보다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옛 동방에서, 그리고 또한 더러 중세시대에도, 종교의 정신이 때때로 같은 신앙의 무리를

2) *Etbik*, § 267.

이단자들로부터 구분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민족으로 결속했다. 그렇지만 언어의 정신이 보다 강력하고 철저하게 민족들을 분리하거나 결속한다. 언어 공동체는 가장 확실한 민족 공동체의 징표이다. 그것은 정신문화의 통일을 의미한다. 관습과 법률 공동체는 그 다음 차례로 접속한다. 그러나 민족은 개인들과 가족들 위에 우뚝 솟으면서 그 모두를 결속하는 통일체로 차츰 차츰 성숙할 따름이다. 그런 다음에 민족의 외형, 태도, 복장, 주택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특징들 가운데 유별난 본성이 뚜렷이 드러나는데, 그것들은 쉽게 인지할 수 있지만 묘사하기는 힘들다. 민족이 수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내내 그 고유성을 펴뜨린 다음에야 비로소 장점과 단점을 지닌 민족적 품성이 정신과 성격 그리고 신체적 특성 가운데 나타난다.

민족은 하나의 문화개념이다. 그러나 국민은 하나의 국법개념이다. 국가 안에서, 그리고 국가를 통할 때 비로소 민족은 국민이 된다. 국가 공동체가 민족통합을 이룬다.

또한 본래의 의미대로 국민이 되려면—민족과 국민이라는 표현은 항상 서로 구별되지는 않는다—지속적인 공동 존재와 공동생활이 필요하며, 그럼으로써 국민은 진정한 통일체를 이룬다. 그럴 때 특정한 국민정신과 국민성격이 자라나는데, 이는 개개인의 정신이나 성격과는 달리 국민 공동체의 큰 무리 가운데서 변성한다. 따라서 하나의 민족적 품성이 있듯이, 하나의 국민 품성도 있으며, 이 두 가지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민족은 법률상 의미보다는 선천적인 의미에서 그 정신의 통일성을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의 인격체로 불릴 수 있다. 그러나 그 공동체는 어떠한 법제도로 확정되지 않는다. 민족은 국법상의 인격체가 될 수 없다. 이와 달리 국민은 국가 속에서 온전한 신체를 갖추게 되면서 법률상의 인격체가 된다.

국민들은 따라서 유기적인 존재이다. 그것들은 그러므로 모든 유기적 생명의 자연법칙 아래에서 존속한다. 개인들의 생애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발전사에서도 연령 시기가 구별된다. 한 국민의 선천적인 기력과 소질, 그 표상과 욕구는 노년기에 이르러 다르듯 유년기에도 다르다. 개개 인간들의

사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발전 과정에서도 또한 한결같이 그 생애의 중간 시기에 정신과 힘이 최고조에 이른다. 다만 개인들의 시기는 몇 십 년으로 나뉘지만, 국민들의 시기는 몇 세기 단위로 구분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민은 불멸의 존재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주해〉

1. 유기적 본성을 지닌 국민의 의미와 독일 법제도의 형성에 끼친 그 연령대의 영향을 다시금 분명히 강조한 것은 사비니(Savigny)의 공적이다.

2. 나는 이전에 프랑스 언어관습에 따라 자연 국민(Naturvolk)을 “Volk”(people)로, 그리고 국가 국민(Statsvolk)을 “Nation”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nasci에서 유래한 natio가 탄과 종족을, 그리고 Volk(populus, $\pi\acute{o}\lambda\lambda\iota\varsigma$)가 도시와 국가를 지시한다는 점에서, 어원학은 뒤바뀐 언어관습을 입증하며, 독일어 언어감각은 이 의미를 따른다. 그러므로 중세시대 독일인들은 하나의 민족이면서 하나의 국민이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지난 몇 세기동안 하나의 민족이었지만 하나의 국민이 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오늘날 그들은 다시 하나의 국민이 되기에 충분한 근거를 지니게 되었다. 스위스인들은 다양한 민족성으로 구성되었지만 하나의 국민이다.

제3장: 민족의 권리

문명이 진보한 덕택에 비로소 우리는 민족의 권리를 말하며 거기에 주목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한다. 민족들이란 인류의 부분이며 거대한 세계사적 발전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존립 기반 또한 주목받고 보호되어야 한다. 항상 인간 존재가 곧 우선적이며 자연적인 기본권리이다. 그렇지만 그 어떠한 인간 존재가 민족적 공동정신의 존재보다도 더 나은 본성의 권리를 지닐 수 있겠는가? 그것은 또한 개인적 존재의 기틀이면서 인류 발전의 기본 조건이다. 그러나 이렇게 처음에는 단순히 윤리적이었던 계명을 적절히 법률 형

식으로 표현하는 일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따름이다. 민족성 원리의 주요 의미는 국법에 있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정치의 문제이다.

민족의 권리 요강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민족의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기엔 충분할 것이다.

1. 민족 언어를 사용할 권리.

언어는 모든 민족이 지닌 가장 고유한 재산이며, 모든 민족의 특징은 언어 속에서 선명히 나타난다. 언어는 민족의 구성원들을 하나의 문화공동체로 묶어 주기에 가장 효과적인 끈이다.

따라서 국가는 민족의 언어뿐만 아니라 그 육성과 문예도 금지할 수 없다. 그 반대로 언어문화가 자유롭게 통하도록 허용하면서, 보편적인 교육의 관심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그 일을 호의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³⁾ 로마인들이 속주들의 토착어를 억압했던 일은 끔찍한 국가폭력의 남용이었으며, 그리고 독일 수도회 영역에서 죽음의 형벌로 위협하는 가운데 벤트족의 민중언어를 금지했던 사례는 위법의 야만행위였다.

그러나 국가관련 사안에서 여타의 민중언어들을 모두 배제한 채 특별히 선호하는 하나의 국가언어를 둘 수 없다는 주장은 이러한 원리에서 비롯한 것은 아니다. 전체 국민의 이해관심이 언어의 통일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민족적 삶보다는 국가적 삶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는 아일랜드어나 켈트어를 제치고 오직 영어만 쓰이며, 프랑스 중앙관청에서는 프랑스어 이외에 독일어나 켈트어가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스위스는 함께 연맹을 이루는 여러 민족성을 보다 세심하게 배려하여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국가언어로 결합하고, 필요하다면 이탈리아어도 존중했다.

그리고 또한 학교가 보다 우수한 문화언어를 장려하고 미개민족의 어린이들이 세련된 문예의 성과와 유산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애쓰는 국가는 어떠

한 방해도 받지 않아야 한다. 그 반대로 어느 개화민족의 언어가 외래어에 밀려 학교와 교회에서 내쫓긴다면, 그것은 그 민족에게 대단히 부당한 일로 각인될 것이다.

2. 민족은 나아가 민족적 관습을 실행할 권리를 지닌다. 그렇지만 그 관습이 보다 상위의 인간 도덕률에 어긋나지 않거나 국가의 제반 권리를 손상하지 않는다는 범위에서 그러하다. 인도를 통치하는 영국인은 정당하게도 그곳의 부인들이 남편의 장례식에서 제물로 희생되는 일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해한 민중유희를 금지하는 일은 그 정당성을 밝힐 수 없는 국가의 월권이다.

3. 고유한 법률제도의 영역에서 단순히 민족이라는 사실만으로 국가적인 승인과 보호를 받을 만한 정당성의 근거는 희박하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국가의 통일과 조화라는 한 부분이, 그리고 또한 국가적인 문화국민의 이해관심이라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전체 인구를 감싸면서 개개 국민의 권리를 개량하거나 폐지하는 입법은 선진 국가의 요구사항이다. 로마인이 로마법을 제국 전역에 적용하려고 애썼다는 사실에 분노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방약무인의 무절제는 비난받을 만하다. 1773년 영국 의회가 벵골에서 영국식 재판절차와 법률 형식을 아직 미숙했던 인도인들에게 강요하려고 했을 때, 그렇듯 아주 비열한 실책 가운데 하나의 일이 벌어졌다. 비슷한 시기에 독일 국가들에서도 관습적인 성문법으로부터 고유한 황무지를 소규모 민중소유 필지로 유지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사람들이 너무 소심하게 대처하는 일이 있었는데, 외래의 보통법을 넓은 범위로 민족 전체에 적용하면서 뻔뻔스럽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계속 권리를 신장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이 민족보다 상위에서고, 민족적 다양성이 법률의 통일성과 법 집행에 양보해야만 하며, 국가 시민들의 권리 평등이 민족적 관례의 다양성보다도 우선권을 지닌다. 로마인들에게는 예속민족들을 법률상 로마인들로 삼는 일이 그들의 언어를 라틴어로 통일하는 일보다 훨씬 쉬웠다. 그리고 우리는 프랑스인들이 그들의 나

3) Oesterreich, *Staatsverfassung v. 1849*, §. 5: “모든 종족들은 동등한 권리(?)를 지니며, 개개 종족은 그들의 민족성과 언어를 보호하고 육성할 불가침의 권리를 갖는다.”

플레옹 법전을 독일어권 알자스와 옛 갈리아어권 브르타뉴에 적용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영국의 입법이 아일랜드인과 웨일스인의 법질서를 세우더라도 우리는 비난하지 않는다. 그러나, 로마인들이 아직 미숙한 독일인들을 로마식 법 집행에 익숙시키려고 하자 독일인들이 대대적으로 자유를 향한 투쟁을 일으키게 되었으며, 모든 민족이 그들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자신의 선천적인(즉, 민족적인) 권리를 보호해야만 한다는 점이 수세기 동안 권리를 확산하는 독일인들의 원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옛 로마식 원칙이 일방적으로 관철되었다면, 민족적 권리를 지닌 모든 민족적 자유는 파멸하고 말았을 것이며, 옛 독일 방식이 완고하게 유지되었다면, 더 발전했던 국가문화와 법률문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로마인들과 게르만족이 서로 적대적으로 대치했으며 두 가지 원칙 가운데 어느 것도 독점적인 지배체제를 이룰 수 없었던 덕택에 민족들은 다행히도 자유를 누리며 문명은 더 진보할 수 있었다.

4. 국가 폭력이 한 민족의 도덕적이며 정신적인 존재를 침해한다면, 그 구성원들은 거기에 맞서 완강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족성을 방어하는 것보다 더 정당하게 폭력에 저항할 만한 근거는 없을 것이다.⁴⁾ 그때 합법성은 손상될 수 있겠지만, 권리는 훼손되지 않게 된다.

5. 민족과 국민 사이에 자연적인 상호 작용이 존재한다. 정치적 소양을 갖춘 민족이 국민으로 될 때 그 본성이 만개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여러 민족적 요소로 구성된 국민은 특수한 민족이 되려고 애쓴다. 정치는 이러한 변화를 주목하면서 후원하거나 방해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역시 이 점에서 심각한 권리의 문제가 제기된다.

4) Niebuhr(*Preussens Recht gegen den Sächsischen Hof*): “민족성의 공동체는 하나의 종족에서 나온 여러 국민들을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국가의 지위보다 더 고귀하다. 문법, 언어, 풍속, 전통, 그리고 문화를 통해 여러 국민들은 낯선 종족과 구별 짓기 위해, 그리고 본래의 종족과 대치하면서 외국과 결속하는 분리주의를 비열하게 만들기 위해 형제관계를 수립한다.”

몇 가지 권리규정을 예시해 보자.

a) 모든 민족이 국민으로 구성될 자격을 지니지는 않는다.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민족은 국민이 될 수 없다. 모든 민족이 본성적으로 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고유한 국가 관념을 결핍하고 있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 그 관념을 자율적으로 실행할 능력을 지니지 못한 민족도 있다. 능력이 없으면 권리도 없다. 따라서 그러한 민족은 보다 뛰어나며 강력한 국민의 지도나 훈육에 순응하도록 신과 역사로부터 지시받는다.

b) 고유한 국가 관념과 또한 그것을 실행할 만한 힘과 욕구를 지닌 민족은 하나의 민족적 국가를 세울 자격을 지닌다. 그 민족은 이렇게 애쓰는 가운데 역사적 법질서를 존중해야 할 의무를 지는데, 그것이 민족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러하다.

c) 민족적 국가의 수립은 결코 모든 민족적 요소를 하나의 국가 전체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에게 꼭 들어맞는 국가상을 확고하면서도 충분히 드러낼 정도로 민족적 요인들이 함께 강력하게 작용할 것을 요구한다.

d) 이미 국민이 되었거나 이제 막 국민이 되려고 하는 민족은 분산된 가지들의 몸통이 되려는 필요성에서 그들을 정당하게 끌어당길 수 있다. 그러나 그 한 부분의 구성원들이 다른 국가 구조물 가운데서 이미 만족하게 지내고 있다면, 그 민족은 그들의 존재가 아쉬울 수 있더라도 억지로 그들을 거기로 부터 분리해 낼 만한 권리를 지닐 수 없다.

e)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 건설은 단일 민족성에 한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민족적 요인들을 공통의 인간 질서로 결합한다.

f) 여러 민족성이 뭉쳐 한 국가를 세우면서 함께 한 국민을 이룬다면, 정치적 권리들은 민족성에 따라 분배될 수 없으며, 민족성을 구별하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은 정치적 공동체와 평등한 권리이다.⁵⁾

5) Eötvös, 1865, *Die Nationalitätsfrage*, Wien.

국제법이 채 갖춰지지 않은 사정 때문에 인간의 법정이 아니라 세계사가운데 흰히 드러난 신의 법정이 물론 그러한 능력과 자격을 결정한다. 다만 국민이 대체로 고난과 실천을 통해 위대한 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그 정당성을 지켜 낸다.

제4장: 헌법의 국민성

단순한 자연국민(민족)보다도 국가국민이 국가 안에서 더 높은 자격을 지닌다. 국가 체제 안에서 거주하는 존재는 활동적인 총체적 인격이다.

국가국민이 반드시 오직 하나의 자연국민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민족적 요소들을 포함한 국민이 더 유리하다. 하나의 국민 안에 두 가지 또는 여러 민족성이 통합되면, 그것은 그러한 민족성의 결합들을 보완하면서 그 장점들을 키우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혼합은 또한 국가의 사명이 단순히 국민에 적합하기보다는 인간적이어야 한다는 의식을 생생하게 유지하도록 돕는다.

이와 달리 국가국민이 본질적으로 하나의 특정한 주요 민족에 기댈 수 있으며, 독일인이 프랑스와 러시아에서, 슬라브족이 프로이센에서, 유대인이 독일에서, 그리고 프랑스인이 북아메리카에서 그랬듯 여타의 국민 요소들은 다만 수적으로 부수적인 관계에 선다면, 그 점은 당연히 국가의 통합에 매우 유리하다. 국가국민의 통합이 권력과 비중을 두고서 서로 겨루는 여러 민족들로 이루어진다면, 그 통합을 기초하고 유지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 영국은 먼저 작센인과 노르만인을, 그 다음에는 잉글랜드인과 스코틀랜드인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 전부와 아일랜드인을 통합함으로써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곤경에 굴복한 오스트리아는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위험에 빠져 있다.

국가가 국민의 몸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면, 그 기관들과 법규들은 국민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요컨대 국가는

반드시 국민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성격에 맞지도 않으며, 그 고유성을 유념하지 않거나, 그 정신과 성향에 적합하지 않는 헌법은 부자연스럽고 쓸모없는 신체이다. 외부의 폭력이 어느 민족에게 그러한 헌법을 강요하거나, 우리가 이미 거대한 정치적 열광의 시기에 보았듯이 잘못 이끌리고 병든 국민이 그것을 선택한다면, 그러한 폭력이 누그러지거나 국민이 냉정을 되찾자마자 곧 그 헌법은 소멸되곤 한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국가 유기체가 입은 결함은 국민의 몰락을 낳을 수도 있거나 오랜 시간 그 완전한 건강 상태를 방해할 정도로 커다란 것이다.

국가국민이 되기에 적합한 모든 위대한 민족은 고유한 정치적 삶의 견해와 더불어 특별한 국가적 임무를 지닌다. 국민은 그 본질의 특징을 국가에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사명을 완수한다. 이것이 곧 국민적인 헌법을 요구하는 국민의 선천적 권리이다. 여러 국민들의 이질성은 그렇게 여러 민족들의 이질성에 상응하며, 국가 형태의 다양성은 신이 민족들의 본성에 배치한 다양성을 입증한다.

그러나 국민의 고유성은 결코 국가 속에서 틀림없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여러 국면의 발전과정을 겪는데, 그 국민이 본래 그대로 머물러 있더라도 그 욕구와 의견은 당연한 생애시기에 따라 변한다. 민족적이며 국민적인 국가는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국민과 동반하면서 그 유기체 안에서 비슷하게 일어나는 변화와 개혁을 겪는데, 그렇다고 그 국가가 완전히 다르게 되지는 않는다. 로마 국가의 궤모습은 그 역사의 여러 시기마다 매우 다양했지만, 그럼에도 그 모습에 드러난 민족적이며 로마다운 성격은 늘 분명히 한결 같았다. 왕정, 공화정, 그리고 제정의 국가 형태는 로마 국민의 여러 연령대에 상응하지만, 그 모든 시기에 특별한 로마 상은 뚜렷이 드러난다. 영국 국민의 발전 단계가 16세기와 18세기로 구분되듯이, 튜더 시대 영국 왕조는 하노버 가문의 영국 왕조와 구별된다. 시대에 맞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일은 국민의 선천적 권리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본성에 어울리는 국가 형태는 언제나 국가 안에서 생존하는 국민의 특성과 발전 주기에 상응한다.

〈주석〉

1. 키케로(Cicero)의 『국가론』 II권 21항에서 카토(Cato)의 말: “한 시대도 한 인간도 국가를 형성하지 못한다.”

2. 프로이센 프리드리히 대왕(『반 마키아벨리즘』 12): “개인들의 성격은 다양하며, 자연은 국가의 성격에(성질에) 꼭 같은 다양성을 부여한다. 나는 한 국가의 성격을 그 위치와 확장, 그 국민들의 수와 고유한 정신, 그 상거래, 관습, 법률, 능력, 결점, 부, 자원으로 이해한다.”

3. 『지배자에 관하여』(1796): “모든 민족을 위해 만들어진 헌법은 전혀 소용없다. 그것은 공허한 추상물, 즉 오로지 관념적 조건에서 정신을 훈련하는 것에만 적합한 학파의 창작품이며, 자기 자신만이 존재하는 상상적 공간에 있는 순수 인간을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4. 『나폴레옹이 스위스인들에게 보낸 편지』(1803): “오랜 기간 있었던 한 국민의 사건들, 사고들, 노력들, 시도들의 결과물이 아닌 정부의 형태는 결코 그 뿌리를 파악할 수 없다.”

5. 시스몽디, 『자유 국민의 헌법에 관한 연구』: “헌법은 법률보다 적잖이 한 민족의 관습, 성향, 기억, 그리고 그 표상방식의 욕구에 기인한다. 한 국민의 고유한 정신과 특수한 역사를 무시한 채 원리라는 이름으로 잘못 존경받는 몇몇 일반 원리에 따라 하나의 새로운 헌법을 그 국민에게 부여하려 한다면, 이는 곧 지극히 피상적이면서 잘못된 정신이 명백하게 드러난 징표이다. 수준 높은 여러 헌법이 등장했으며, 그 가운데 여러 헌법이 단순히 전용되었던 지난 50년은 그 창시자의 기대나 그것을 수용했던 사람들의 희망에 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6. L. 랑케(*Zeitschr.* I, 91): “모든 국민이 각자 고유한 정치를 지닌다는 것이 우리의 이론이다.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모든 심성이 관통하는 민족 독립

성인가? 그것은 단지 우리의 도시들에 외래 감독관이 앉아 있지 않으며 외국 군대가 우리 국토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우리의 정신적 본성을 외부세력에 매이지 않은 채 완전하게 할 수 있으며, 우리 스스로 그러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훨씬 중요하지 않은가?”

번역: 박근갑

4. 가토 히로유키, 『國法汎論』

第2款

제2 民種(Nation)과 國民(Volk)

많은 民衆들이 자유롭게 集合·混同하지만 하나의 民種이 되지는 못한다. ○또 衆多의 各人이 상호 合同하더라도 아직 國民이라 칭할 수 없으며, 國家라고도 칭할 수 없다.

아울러 같은 戚族이 서로 集合하고 함께 和同一致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아직 民種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國民을 창출하지도 못한다. 그런데 Schleiermacher(獨乙, 1768~1834)는 그의 저서 *Ethik*(道義學의 書)에서 “같은 戚族끼리 合同하고 通婚하면서 다른 民衆과는 서로 혼인하는 일이 없다면 마침내 그 戚族은 하나의 國民이 될 것이다”라는 문장을 남겼는데, 고금의 역사를 참고해 보면 이 주장이 틀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羅馬 Patoricier(羅馬의 고귀한 戚族)들은 동족끼리만 혼인을 했고 Plebejer(羅馬의 下等 戚族)들도 마찬가지로 동족끼리만 혼인을 하였다. ○하지만 이들 두 戚族이 각각 國民이 되지는 않았고, 또 훨씬 앞 시대에 이들 두 戚族은 서로 혼인하는 일이 없었음에도 이미 合同하여 羅馬 國民이 되었다. ○日耳曼 國民은 각 門地

(Stände)로 나뉘어 오로지 같은 門地끼리만 혼인을 하였다. ○근래에는 通婚을 하고 異民種이라도 굳이 피하는 일은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新民種이 생겨나지는 않았다.

무릇 民種의 기원은 원래 하나의 人種 혹은 거대 民種의 일부분이 나머지 부분에서 분리했거나, 또는 다른 人種 혹은 다른 民種의 일부분이 서로 混同하여 마침내 일종의 性情·風俗이 만들어짐으로써 발생하였다. ○단, 民種의 起立을 촉진시키는 것은 특히 精神·情意에 관한 것, 즉 敎道, 言語, 風習, 法律 등이다.⁶⁾

옛 동방 지역에서 종교(神道)의 차이로 新民種이 생겨난 것은 같은 종교를 받드는 무리들이 단결하여 異敎徒들과 분리하였기 때문이고, 中古 시대에도 간혹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단 言語의 차이로 民種이 서로 離合하는 것은 종교의 차이에 의한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무릇 言語의 동일함은 아마 民種의 合同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徵候이다. ○이는 精神 상의 開化가 동일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 다음으로 民種의 合同을 촉진시키는 것은 風習과 法律의 동일함이다. ○그러나 民種의 合同은 매우 서서히 이루어지는데 처음에는 衆多의 個人을 습하고 점차 여러 戚族의 協同으로 나아간다. 마침내 많은 人衆의 合同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세월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民種은 점차 面貌와 體勢를 갖추고, 또 복식, 주거, 그 밖의 사소한 것까지 모든 體裁를 갖추게 된다. 여기서 그러한 온갖 사소한 것들을 전부 나열하기란 어렵지만 잠시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風習과 體裁를 갖춘 民種은 후대로 繼承하면서 수백 년이 지나 비로소 一人種과 같은 民種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民種은 性情·體質에 있어 고유한 長短점과 愚劣이 있다.

民種은 많은 民衆이 함께 同一 취향의 開化를 얻음으로써 탄생한다. ○國

민은 많은 民衆이 함께 하나의 國家를 이룸으로써 탄생한다. ○民種은 國家의 성립에 의해 비로소 國民이 되는 것이다. ○즉 國家社會의 성립에 의해 비로소 國民의 合同이 생겨나는 것이다.

國民도 일정 기간 同居하지 않으면 결코 진정한 合同物이 될 수 없다. ○國民은 일정 기간 同居하고 서로 生養함으로써 마침내 일종의 性情·風俗이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性情, 風俗은 各人의 性情·風俗과는 전혀 달리 특히 國民 衆多의 結合에서 점차 생겨나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소위 一人種과 같은 民種처럼 一人種과 같은 國民이 비로소 탄생하는 것이다. 이때 一人種과 같은 民種과 一人種의 國民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各民種은 동일한 言語로 合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活人이라고 칭할 수는 있지만, 法制 상의 活人이라고 칭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民種社會는 결코 法制사회가 아니다. ○즉 民種은 결코 國法 상의 活人이 아니다. ○그러나 國民은 전적으로 國家의 힘에 의하여 비로소 하나의 형태를 갖추게 되고 또 國法 상의 活人이 되는 것이다.

國民 또한 活機體이므로 그 생존에서 항상 天律에 순응함은 마치 세상만물이 活體임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國民의 興亡盛衰에 자연적 시간의 등급이 있음은 마치 각 개인의 탄생, 성장, 쇠락에 자연적 시간의 등급이 있음과 마찬가지로이다. ○國民이 처음에 부흥했을 때의 氣力, 意見, 요구는 마침내 그것이 점차 衰頹하려 할 때의 氣力, 意見, 요구와 전혀 다르다. ○國民의 精力, 權勢가 보통 최고의 시기에 있을 때 최고의 點度에 오르는 것은, 마치 각 개인의 精力, 氣勢가 중등의 연령에 있을 때 최고의 點度에 도달하는 것과 같다. ○단, 國民이 생존하는 시기는 대개 수백 년에 이르지만 각 개인의 생명은 겨우 수십 년을 넘지 않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國民이라 해도 결코 永世不死의 慶福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6) [가토의 해설] 骨格 피부색 등 모두 형태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히 精神·情意에 관한 것 즉, 敎道, 言語, 風習, 法律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말한다.

第3款 民種의 權利(Rechte)

우리가 여기서 民種의 권리를 논하면서 民種의 權利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연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바야흐로 文明開化의 進歩 덕분이다. ○ 民種은 人類의 한 部分이요 실로 世代의 變遷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므로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이를 잘 保護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무릇 사람의 權利 중 가장 첫 번째 지위를 차지하며 자연적으로 생긴 것은 바로 存在의 權利(사람의 體軀 및 精神이 存在할 수 있는 권리임)이다. ○ 그렇지만 存在의 權利 중 각 民種이 協同精神을 具有할 權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 ○ 분명 이 權利는 각 個人의 存在의 礎石이 되고 또 人類 開明, 進歩의 근본이 될 것이다.

다만 지금은 이 권리가 條理 상으로만 존재할 뿐이지만 반드시 진정한 權利가 될 때가 올 것이다. ○ 民種의 權利를 중시하여 보호하는 것은 오늘날 政治(Politik) 영역에만 있을 뿐 國法에 관련된 바는 없다. 그러나 다음 여러 조항은 현재 民種 權利의 原則으로 認定해야 하며, 같은 民種의 구성원에게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第1] 각 民種은 자신의 言語를 사용할 權利가 있다. 무릇 言語는 각 民種에게 고유한 소유물이다. 각 民種 고유의 性情·風習을 표현하는 것은 오로지 언어이다. 또 동일 民種 구성원 간의 교제가 가장 깊어지는 것도 言語에 의해서이다.

그러므로 國家가 각 民種이 고유한 言語를 사용하거나 육성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시키거나 그들의 文學 연구를 금지시킬 권한은 없다. ○ 덧붙여서 國家는 각 民種이 자신의 언어를 修成하는 데 중사할 自由權을 보장하고, 또 修成方法 一般의 開明에 장애가 없도록 장려하는 것을 기꺼이 국가의 의무로 삼아야 한다. ○ 고대 羅馬정부가 屬國의 言語를 억압한 것은 참으로 가혹한 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獨乙의 Orden 즉, 수도회(십자군이 일어남에 따라 병자 등을 구조 간호한다는 主旨에서 맺은 大義會임)의 管領地에

서 Wend 民種(獨乙에 거주하는 슬라브 民種을 말함)의 언어를 금지시키고 이 언어를 사용하면 사형에 처하는 법을 만든 사례는 매우 폭력적인 조치였다.

다만 이러한 사정 때문에 가령 일반 國事に 관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내 여러 民種 가운데 한 民種의 언어를 國語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반드시 모든 民種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이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개별 民種의 사소한 일이 아니라 일반에 관계되는 사건은 쉰 國民에게 해당되는 일이므로 반드시 동일 言語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그러므로 영국의 巴力門에서는 당연히 英語를 사용하고 阿爾蘭語 또는 gälisch(蘇格蘭 언어)를 쓰지 않으며, 또 佛의 중앙정부에서는 오로지 佛語만을 사용하고 獨乙語 혹은 keltisch(켈트民種語)를 사용하지 않는다. ○ 그런데 오직 瑞士國은 국내 民種의 편리함을 도모하여 佛, 獨의 양 언어를 겸용하고 또 以大利語도 병용한다.

다만 국가가 학교에서 최상등 民種의 언어 학습을 장려하고, 또 開明하지 못한 民種의 자녀를 勸導하여 상등 民種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고등 文學을 연구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그럼에도 이미 開明한 民種의 자녀에게 만일 학교 혹은 교회에서 고유 언어를 버리고 다른 타 언어만을 학습시킨다면 이는 부당한 일이다.

[第2] 그리고 각 民種은 고유 風俗에 따라 행동할 權利를 갖는다. 다만 그 風俗이 倫理를 거스르거나 國法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 ○ 印度에는 과거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뒤를 따르는 惡風이 있었는데 英國이 印度를 藩屬으로 삼고 이를 엄금한 것은 나라로서 온당한 조치라 할 만하다. 그렇지만 종래에 民俗에 존재하던 遊戲 등에서 國家에 방해되지 않는 것조차 모조리 금지시키는 일이 있다면 이는 결코 온당한 일이라 할 수 없다.

[第3] 法制 시행의 主旨는 각 民種 고유의 法的 保護, 維持가 아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法制의 설정은 國家의 一致合同과 전 國民의 利益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 전체 人民을 위한 것이 목적이기에 開明, 進歩한 각국이 民種 고유의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말

할 수 있다. ○고대 羅馬國이 모든 版圖에 걸쳐 羅馬法을 시행하려 한 시도는 틀렸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방법이 매우 지나쳤고 적절함을 잃은 것은 옳지 않다. ○영국의 巴力門에서 印度人이 英國 법률에 익숙하지 않음은 아랑곳 않고 1773년(安永 2년) 孟加拉(Bengalen)에서 본국 법률과 재판법을 시행하여 억지로 이를 준수하게 한 것은 전형적인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같은 시기에 獨乙은 각 지역의 인민을 위하여 다수의 복잡한 慣用法을 護持, 保存하고, 또 全國을 위하여 異邦 法律(羅馬법률)을 시행하였다. 결국 慣用法의 保存은 지나치게 신중하였고 異邦法律의 시행은 과감하지 못하여 양쪽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법률 개정의 主旨은 전 국민을 위하는 것이고 개별 民種을 위한 것이 아니다. 法制 및 裁判은 全國적인 통일이 요구되므로 각 民種의 차이를 인정할 수 없다. 분명 國人은 동일한 法律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民種의 習慣에 구애되어서는 안 된다. ○고대 羅馬國이 藩屬 民種에게 羅馬 법률을 준수토록 한 것은 羅馬 언어를 사용하게 한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었다. ○또 근세 佛國이 원래 獨乙의 영토 Elsa β와 옛 Gallien 民種이 거주하던 Bretagne에 Code Napoleon(那破倫이 선정한 법률)을 시행했는데 이 역시 잘못된 일이 아니다. ○또 英國이 본토 법률을 阿爾蘭 및 威勤士(Walliser)에 시행한 일도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고대 羅馬가 당시 미개한 日耳曼人을 羅馬 법률에 복종시키려고 함으로써 결국 日耳曼人의 離叛을 초래했고, 이들 인민이 속박을 벗어나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는 日耳曼人이 羅馬 法意에 대하여 자신들이 古來 수백 년간 인정해 온 法意와는 모순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또 日耳曼은 일찍이 民種의 법률을 각 民種에게 맡기고 民種이 태생적으로 가진(즉 民種고유의) 법률을 사용하고 보호하는 것이 法意의 도리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므로 만약 고대 羅馬의 法意만을 옳다고 여기고 전 版圖의 법률을 통일하려 했다면 결국 각 民種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기에 이르렀을 것이다. 또 만약 완고하게 옛 日耳曼의 法意만을 옳다고 여겨 民種의 법률을 보존하고자 했다면 결국 국가의

도리인 開明, 進歩를 저해하게 됨은 필연적이다. ○羅馬人과 日耳曼人이 끝내 적대하여 싸우느라 자신들의 主旨을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民種의 자유권도 훼손되지 않았으며 국가의 도리인 開明, 進歩를 저해하지 않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 말할 수 있다.

[第4] 어느 民種이 만일 靈魂, 心思와 관련된 일을 정부로부터 폭압당한다면 이에 저항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릇 정부의 폭정에 저항함에 있어 民種의 권리를 防護하기 위한 저항 이상으로 정당한 것은 없다. ○다만 民種이 이러한 저항을 한다면 어김없이 恭順하지 않다는 汚名은 피할 수 없음은 당연하겠지만 이로 인해 權利의 훼손은 막을 수 있다.

[第5] 民種과 國民은 자연히 상호 관계가 생겨났다. ○국가를 이루는 데 참을 수 있는 民種은 國民이 되어 비로소 그 性的 本分을 다할 수 있고, 또 여러 民種으로 성립된 國民은 서로 分 하려고 애쓰는 일도 있다. ○그리하여 정치가는 이 변화에 주목하고 이를 鼓舞하거나 차단하려 한다. ○그러나 法理에 근거하여 變化의 옳고 그름을 변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法理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이다.

(1) 각 民種이 반드시 國家를 이루어 國民이 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만일 民種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智德을 겸비하지 못한다면 國民이 될 권한은 없다. ○따라서 각 民種이 당연히 國民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諸 民種 중에 스스로 국가를 이룰 才智를 갖추지 못한 民種이 있으며 또 스스로 국가를 건설할 氣力을 갖지 못한 民種이 있기에 그러하다. ○무릇 국가를 이룰 수 없는 民種은 이를 이룰 權利도 갖지 못한다. ○이 때문에 知德이 얕고 미력한 民種은 才智와 氣力이 우수한 國民의 보호와 嚮導를 받아야 함은 天神이 명하는 바이며 고금의 事蹟에 명료하게 기록된 사실이다.

(2) 스스로 국가를 이룰 才智를 갖추고 또 국가를 건설할 氣力을 가졌고 나아가 정말로 建國 사업을 긴급하게 여기는 民種만이 스스로 국가를 건설할 권리를 갖는다. 그렇지만 건설에 있어 종래 세습하는 諸 法制 중 前途의

進歩에 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애써 유지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 民種의 여러 部分이 전부 合同해야만 새로이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가령 아주 작은 부분이 合同해서 그 民種에 적합하고 확고하며 견실한 國家를 건설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4) 이미 國民이 된 民種, 혹은 國民이 되고자 하는 民種이 完備를 요구하기 위해 각처에 흩어진 同種의 民衆들을 召集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다른 邦國에서 이미 만족하게 사는 同種의 民衆을 굳이 소집하여(즉 소집할 필요가 없음에도) 그 나라를 떠나 합병시키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없다.

(5) 最高等 國家는 결코 하나의 民種의 合同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 民種이 서로 협동하여 인민사회를 이룬 것이다.

(6) 여러 民種이 서로 합하여 하나의 國家를 이룬다면 반드시 각 民種이 동등하게 동일한 공권리의 보장을 요구해야 하며 民種에 따라 이를 빼앗을 수는 없다. 단 지금은 列國法이 아직 완전하게 구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民種이 國民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갖느냐 마느냐도 이를 판정하는 法院이 아직 없으니 그저 세계 각국의 事蹟과 天神의 법정에 맡길 뿐이다. ○각 國民은 그저 爭鬪의 어려움을 견디고 고난을 이겨 넘으로써 權利를 보존할 수 있을 따름이다.

第4款 國憲이 國民의 本性을 따라야 하는 理

(Volksthümlichkeit der Verfassung)

무릇 國家는 특히 국민의 권리를 民種의 권리보다 한층 더 큰 것으로 한다. ○국민은 본래 人衆이 서로 合同하여 一體를 이룸으로써 國家精神이 되는 것이다.

國民은 반드시 오직 하나의 民種에서 성립할 필요가 없고, 또 여러 民種이 합쳐져서 하나의 國民이 되는 것 또한 무방하다. ○두 개 혹은 여러 개 民種이 합쳐져서 하나의 國民이 된다면 오히려 여러 民種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

점을 증대시키는 이로움이 있다. ○국가의 주안점이 단지 民種民族의 치안이 아니라 人類의 치안에 있다는 이치도 이로부터 명백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

다만 여러 民種이 합동하여 國民이 된 나라에서 그 가운데 하나의 民種이 중요한 위치로 나머지 여러 民種의 상위에 위치하고, 나머지 여러 民種이 하등의 위치에 있는 것이 國家의 一致協同을 위하여 매우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佛國와 峨羅斯에 거주하는 獨乙民種, 普魯士에 거주하는 斯拉高(slavischen)民種, 獨乙에 거주하는 猶太民種, 北亞米利加에 거주하는 佛民種은 下等 지위의 民種이다.⁷⁾ ○그렇지만 만약 국내 여러 民種이 權力과 위세를 내세워 항상 서로 경쟁한다면 國家의 一致協同을 維持保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英國에서는 처음에는 薩克素(Sachsen)인과 諾曼(Normannen)인을, 그 다음에는 英倫(Engländer)인과 蘇格蘭(Schotten)인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英蘇를 통합하여 阿兩蘭인과 서로 필적하고 경쟁시킨 일이 있었지만 결국 모두 一致協同할 수 있었다. 따라서 壤地利와 같은 경우에는 諸 民種의 경쟁이 오늘날에도 아직 멈추지 않고 있다.

國家는 國民의 體軀가 되어 맡은 바를 다하고, 각국의 制度 憲法은 반드시 각 國民 固有의 性情과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는 각국의 國憲이 반드시 國民에게 적합해야 함을 말한다. ○國民 性情에 맞지 않고 習俗에 맞지 않으며 精神과 情意에 맞지 않는 國憲은 條理에 어긋나 국가에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만약 외국에게 꺾박당하여 外國의 意를 떠받들어 國憲을 制定하거나, 과거 각국의 戰國時代의 혼란처럼 國民의 心神이 혼란스러워 일단 가령 國憲을 制定하는 일이 있다면, 결국 외국 權力이 끝내 쇠퇴하거나 國民의 心神이 평상을 회복한다면, 이 國憲의 소멸은 필연적이다. ○다만 國憲의 소멸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로 인해 國民이 쇠락하여 健全함을 회복하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7) [가토의 해설] 단 제도상 尊卑의 等級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연스런 형세로 그 지위를 달리하는 것이다.

國民이 될 거대 民種은 반드시 國家에 적응하는 本性을 지니며 국가를 이를 특별한 임무를 띤다. ○이러한 民種이 國家를 이루어 그 本性을 國家로 향함으로써 國家 本性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면 비로소 그 임무를 다하였다 고 하겠다. ○이는 각 國民이 반드시 자신의 본성에 적응하는 憲法을 얻을 수 있는 당연한 權利에 의해 생겨나기 때문이다. ○각 國民이 本性을 달리하는 것은 각 民種의 本性의 바탕이 다르기 때문이다. 각국 政治 體裁가 다른 것은 하늘이 각 民種에게 부여한 性情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國民 本性은 國家에 대하여 항상 동일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다. ○國民은 開明 進歩에 있어 반드시 여러 번의 시기를 경과하는 것이므로 혹시 本性이 항상 동일하더라도 요구와 意見이 이 시기가 변천함에 따라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무릇 國民의 本性을 중시하는 나라는 능히 國民을 유도하여 開明·進歩하게끔 하여 開明·進歩의 정도에 따라 항상 法制의 개혁을 중시한다. 따라서 國民은 本性을 일변시켜 他 國民처럼 되지는 않는다. ○羅馬는 처음 왕국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공화정치를 하였으며 나아가 帝國이 되었지만 이러한 세 政體는 모두 國民의 開明 進歩의 정도에 따른 것이었고, 羅馬 國民의 本性은 항상 의연히 존속하여 끊임없이 변화하지는 않았다. ○英國은 16세기와 18세기에 國民 進歩의 상황이 매우 달랐기 때문에 Tudor씨(1485년에서 1603년까지 왕위에 있던 氏族)의 제도와 阿那威(Hannover)씨(1714년부터 현재까지 왕위에 있는 氏族)의 제도는 서로 다르다. ○이는 시대의 좋고 나쁨에 따라 國民이 國憲을 개혁할 수 있는 권리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논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에서 살아 있는 國民의 本性和 進歩의 정도에 따라 설정된 政體制度는 항상 國民에게 적응하는 政體制度인 것이다.